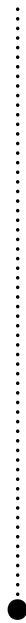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337회 임시회(2023. 2. 1. ~ 2. 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학홍 행정부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의 시작과,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작년 우리는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하여 노력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굳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토끼의 지혜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모두를 감동시켰던 봉화의 기적 같은 희망차고 기쁜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실한 지방시대를 넘어 찬란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경상북도로 도약하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차 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8
III. 의안처리	14
IV. 민원처리	15
V. 본회의 보고사항	16
VI. 5분 자유발언	19
□ 최 병 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9
□ 김 대 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22
□ 손 희 권 의원(교육위원회)	28
□ 임 기 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2
□ 권 광 택 의원(교육위원회)	35
□ 김 대 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9
□ 이 동 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43
□ 차 주 식 의원(교육위원회)	47
□ 김 원 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52

부 록

□ 조 례 안(9건)	61
□ 동 의 안(3건)	99
□ 결 의 안(1건)	105

I. 개 황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1일에 개최하여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13회, 특별위원회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1일(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첫 번째 임시회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후계·청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지역활력 증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할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정책대안을 제시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38회 임시회로 2023년 3월 9일(목) 오후 1시 40분에 개회를 약속하고 폐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다. 집회일시 : 2023년 2월 1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3년 2월 1일 ~ 2월 9일(9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6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상임위원회							특 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예결 결산	기타
금 회	15	2	2	2	2	2	2	1	-	2
누 계	111	10	15	14	11	11	12	12	12	14

※ 누계는 제12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 1.(수) 14:00 (제1차)	☐ 안전처리 • 5분 자유발언(최병근·김대일·손희권·임기진·권광택) ○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 휴회의 건	
2. 9.(목) 11:00 (제2차)	☐ 안전처리 • 5분 자유발언(김대진·이동엽·차주식·김원석 의원)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 1.(수) 11:00 (제1차)	☐ 안전심사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2. 9.(목) 10:00 (제2차)	☐ 안전심사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 1.(수) 17: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2. 2.(목) 10:00 (제2차)	☐ 안전심사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버스과학국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전략산업국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2.2.(목) 10:30 (제1차)	☐ 안전심사 ○ 2023년도 업무보고(감사관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여성아동정책관 소관) ○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2.3.(금) 10:30 (제2차)	☐ 안전심사 ○ 2023년도 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023년도 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안	건	비고
2. 1.(수) 16:30 (제1차)	☐ 안전심사 ○ 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목) 10:00 (제2차)	☐ 안전심사 ○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 1.(수) 16:30 (제1차)	☐ 안전심사 ○ 2023년도 업무보고((재)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2. 2.(목) 10:3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 2023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 1.(수) 16: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2. 2.(목) 10:00 (제2차)	☐ 안전심사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 1.(수) 16:30 (제1차)	☐ 안전심사 ○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9.(목) 10:15	☐ 안전심사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국)·독도재단 소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안	건	비고
2.9.(목) 13:30	☐ 안전심사 ○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 결		부 결	기 타				폐 안
					원안	수정						
계		17 (184)	16 (183)	16 (181)	15 (172)	1 (9)	0 (0)	0 (0)	0 (0)	0 (2)	1 (1)	
조 례 안	소 계	10 (89)	9 (88)	9 (88)	8 (82)	1 (6)	0 (0)	0 (0)	0 (0)	0 (0)	1 (1)	
	의 원 발 의	7 (65)	6 (64)	6 (64)	6 (63)	1 (1)					1 (1)	
	위원회 제 안	0 (4)	0 (4)	0 (4)	(4)							
	도지사 제 출	3 (15)	3 (15)	3 (15)	2 (10)	1 (5)						
	교육감 제 출	0 (5)	0 (5)	0 (5)	(5)							
	규 칙 안	0 (0)	0 (0)	0 (0)								
예산·결산		0 (8)	0 (8)	0 (8)	(6)	(2)						
동의·승인		3 (36)	3 (36)	3 (34)	3 (33)	(1)				(2)		
건 의 안		0 (2)	0 (2)	0 (2)	(2)							
결 의 안		1 (16)	1 (16)	1 (16)	1 (16)							
기 타 안		3 (33)	3 (33)	3 (33)	3 (33)							
청 원		0 (0)	0 (0)	0 (0)								

※ ()안은 제12대(제332회~제337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금회		

2. 진 정

위원회	접수	처 리					처리 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6)	2 (4)	2 (3)			(1)	2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1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3)	2 (3)	2 (3)				
농 수 산							
건설소방	1 (2)	(1)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12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7건(조례안 10, 동의안 3, 결의안 1, 기타안 3)

2. 처리 의안 : 16건

- 원안가결 : 15건(조례안 8, 동의안 3, 결의안 1, 기타안 3)
- 수정가결 : 1건(조례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10건(원안가결 8, 수정가결 1, 계류 1)

연 번	접 수 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1.20.	도지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	'23.1.20.	남영숙 의원 외 17명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류
3	'23.1.20.	강만수 의원 외 22명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4	'23.1.20.	도지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5	'23.1.20.	도지사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6	'23.1.20.	이충원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7	'23.1.20.	이철식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연 번	접 수 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8	'23.1.20.	이선희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9	'23.1.20.	윤중호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0	'23.1.20.	윤중호 의원 외 9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동 의 안 : 3건(원안가결 3)

연 번	접 수 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1.20.	도지사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2	'23.1.20.	도지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 가결
3	'23.1.20.	교육감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 결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 번	접 수 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2.2.	김대진 의원 외 9명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가결

○ 기 타 안 : 3건(원안가결 3)

연 번	접 수 일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23.2.1.	의장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 가결
2	'23.2.1.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 가결
3	'23.2.1.	의장	휴회의 건	원안 가결

4. 조례 공포 사항 : 9건(도 7, 교육청 2)

연 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796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3.2.23.	도
2	제4797호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3	제4798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	제4799호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제4800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	제4801호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	제4802호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8	제4803호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3.2.	교육청
9	제480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VI. 5분 자유발언

《 제337회 임시회(2023년 2월 1일) 》

□ 최병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계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도약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북의 다리가 되어 줄 김천~문경 연결철도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적극 유치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문경 연결철도 구간은 수서에서 거제, 즉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남북 종단 관통 노선인 중부선의 허리이면서도 아직까지 유일하게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김천~문경 구간의 연결은 총 69.8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는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방시대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경북내륙까지 65분 이내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수도권·충청권·남부권을 잇는 새로운 산업벨트의 형성으로 지역의 산업생태계는 비약적으로 팽창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문경 구간은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통과된 상황입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부선의 다른 구간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늦어도 2027년에 개통되는 상황에서 김천~문경 구간만 착공이 늦어져 2030년 이후에 개통된다면 경북의 성장, 나아가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경상북도는 김천~문경 구간 연결철도가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 추진은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신속히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경상북도도 공공기관의 유치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형 공공기관보다는

중소 규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들 공공기관의 연내 지역 이전을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공실 확보의 노력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경북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이 중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3개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유치와 더불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혁신도시다운 방향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기관과 연계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거점의 역할을 하며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는 경북의 혁신적인 경제성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그려나가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자랑스러운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가와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경북, 그중에서도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 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그야말로 세계유산의 보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가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은 국내 총 13개 중 5개로 전체의 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경북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 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 자원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
에서도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마땅
합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해 2012년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건립
되었고, 전북 전주에는 무형유산의 전승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이 2013년에 건립되어 국가 차원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앞서 이철우 지사님께서서는 민선 8기 출범을 알리면서 “문화의 힘으로 지방 시대를 앞당기겠다.”, “최고의 부가가치는 문화예술의 힘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관광에 투자하고 또 투자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예산 지원 현황만 보더라도 당시 지사님의 당찬 포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적게는 1억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6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일몰제 시행으로 2017년부터 매년 지원 받던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 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②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 국·도비 지원 내역								
연도	행사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시비	자부담	
199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7	5억7천만원	-	1억4천만원	1억3천만원	1억7천만원	1억3천만원	
1998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8	5억3천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2억9천만원	5천만원	
1999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9	6억6천만원	6천만원	1억원		4억원	1억원	
2000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0	8억1천만원	1억4천만원	1억4천만원		4억원	1억3천만원	
2001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1	8억6천만원	1억원	1억원		4억7천만원	1억9천만원	
2002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2	11억4천만원	1억원	1억원		6억2천만원	3억2천만원	
2003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3	12억2천만원	1억3천만원	1억3천만원		5억4천만원	4억3천만원	
2004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4	15억1천만원	2억원	1억6천만원	8천만원	5억4천만원	5억4천만원	
2005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5	20억2천만원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	8천만원	5억8천만원	8억6천만원	
2006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6	16억4천만원	3억원	3억원	3천만원	5억8천만원	8억4천만원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정신문화재단

③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 국·도비 지원 내역								
연도	행사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시비	자부담	
200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7	17억5천만원	2억6천만원	2억6천만원		7억원	5억3천만원	
2008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8	24억9천만원	8억원	8억원		7억원	5억9천만원	
2009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9	미개최(신종플루)						
2010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0	24억2천만원	8억원	8억원		7억원	1억2천만원	
2011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1	22억4천만원	3억원	3억원		11억원	5억4천만원	
2012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2	21억7천만원	3억원	3억원		11억원	4억7천만원	
2013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3	23억2천만원	3억원	3억원		11억원	6억2천만원	
2014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4	16억7천만원	1억원			11억원	4억7천만원	
2015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5	18억9천만원	2억원	2억원		10억원	4억9천만원	
2016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6	20억원	2억원	2억원		10억원	6억원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정신문화재단

④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 국·도비 지원 내역								
연도	행사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시비	자부담	
201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7	19억9천만원	-	-		15억원	4억9천만원	
2018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	21억1천만원	-	-		15억4천만원	5억7천만원	
2019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9	19억5천만원	-	-		10억원	9억5천만원	
2020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0	미개최(코로나19)						
2021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1	미개최(코로나19)						
2022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2	16억2천만원	-	1억원		15억2천만원	-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출처: 한국정신문화재단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나 개최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2



출처: 문화도시안동 blog



축제 공간을 구 안동역 앞 거리로 옮겨 시민과 상인이 주도하고,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거리형 축제로 탈바꿈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을 제대로 보전하고, 더 나아가 시대정신과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상북도가 국내 세계유산 최다 보유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 도내 건립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둘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명성을 되찾기 위해 중단된 국비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공항으로 구축될 공항
경제권에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부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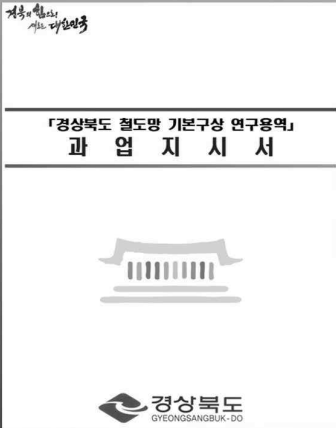
올해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신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청의
교통망 구축 계획을 보면 통합신공항이 과연 우리 경북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경북도청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에서 만든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저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경북의 서쪽 지역에만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동부권은 아예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기에 도표에도 나오지 않고 저렇게 표로 가려져 있습니다. 경주, 영덕, 포항, 울진 이런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또 최근 경상북도가 7억 원을 들여서 발주한 경상북도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서도 경북 동부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또 여기 산업단지를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상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경상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주관기관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담당자			

우리 통합신공항의 효과가 경북 23개 시·군에 골고루 수월되어야 함에도 경북의 특정 지역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말하는 공항 경제권이 단순히 군위·의성의 공항과 인근의 배후단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중국의 청두 공항처럼 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도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 전체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당장 포항국가산단과 영일만항 물류와 연계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 수소에너지 클러스터인 블루벨리산업단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이번 신공항의 교통망 구축 과정의 우선 순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상황이 이렇진대, 다른 경북 동부권 시·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동부권 시·군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포항 등 우리 동부권의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또 동부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물류와 연계될 때 통합신공항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기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모두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도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난방비는 34% 인상되었고, 등유 가격은 56.2%나 올라 400여 개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부담은 도시가스의 경우 2배 이상 부담이 늘어났고, 농촌 지역 대다수의 도민들이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30만 원 정도면 한 달을 버텼지만 올해는 50만 원 이상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한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최강 한파는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의 지원비를 2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경상북도에서도 노인·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만 5,000가구와 한파쉼터 5,000개소에 145억 원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민들은 여전히 난방비 부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포항·구미·경주·경산·칠곡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평균 이하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 미만인 시군은 의성·성주·청도·봉화·영덕·울진 등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많은 지역의 도민들이 등유를 이용하여 힘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소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등유를 이용하여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많은 도민들이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의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상

북도에서는 더 늦기 전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난방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의 책임 공방과 지원대상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1백 개의 이론보다, 1천 개의 웅변보다, 1만 개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썰어 줄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 민선 7기 취임 이후 항상 운동화·점퍼 차림으로 도민의 일꾼을 자처해 온 이철우 도지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철우 도지사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넘어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 예산을 편성,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여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기획안으로 교육 중심 경상북도·경북교육청 간 협력적 프로세스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초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요 정책의 중심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혁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 맞춤 개혁 분야입니다.

정부는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 체계 정비를 통해 '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제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 아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여성아동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것이며, 도교육청 또한 유사하지만 새로운 업무를 잘 이관 받으려면 조직 정비와 인력을 충원하고 교원 양성체계 및 처우 개선,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재정·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히 바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결혼·출산을 저하, 맞벌이가정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는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교육서비스 마인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 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타 시·

도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개혁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도입되어 고등교육의 재정 여건이 예년보다는 안정성을 갖추게 되어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지역을 목표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대학,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또 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합니다. 당장 올해 공모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의 시범 운영에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초·중·고, 대학의 학교시설을 지역민과 함께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때마침 교육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문을 열고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정부 정책 방향을 토대로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선제적이고

열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바로 올해가 지역 인재 육성 지원책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이 지역 사회에 취업하여 정주하며 지역 인구
소멸을 혁파하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뜨거운 동력이 경북에서 힘차게 출발하여 경북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337회 임시회(2023년 2월 9일) 》

□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경북도에서도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 의료자원 부족으로 신음하는 경북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 필수의료로 제공받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을 크게 밑돌며, 특히 서울의 3.45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돼 지역의료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의료 역량을 제고할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 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 교육 및 양성하며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사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인천, 충남, 전북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간 잠정 중단됐던 정부 의료기관 협의가 지난 1월 재개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도 협의에 나설 것인 만큼 도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경북의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인근 대구에 다섯 곳이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의료자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98개소 중 경북에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75%인 12개소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환경을 타파하고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이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 충원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초고령과 의료취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의 의료 역량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지역에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중증·응급 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자랑스런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인사교류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흐름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심 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교류 활성화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 2,36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 경북도 공무원의 파견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는 절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서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인력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난 2022년 4월에 공공기관 인사교류를 검토한 바 있고,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인사교류 조항을 두어 의료원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뒀습니다. 현장의 애로 및 모니터링 등 제도의 안착과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관리의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고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에서 마케팅 관련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문화관광공사 마케팅 전담인력들을 해당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콘텐츠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경우 콘텐츠진흥원의 인력을 교류하고 활용하는 등 별도의 인력 채용 없이도 신규 프로젝트를 운영할 인재풀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력 운영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인사관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조직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부여하고 열린 조직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함께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 재배치, 신규 수요 현장 서비스 분야 재배치 등 체계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TF 구성 등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책임감으로 선도형 정책 대전환을 경상북도가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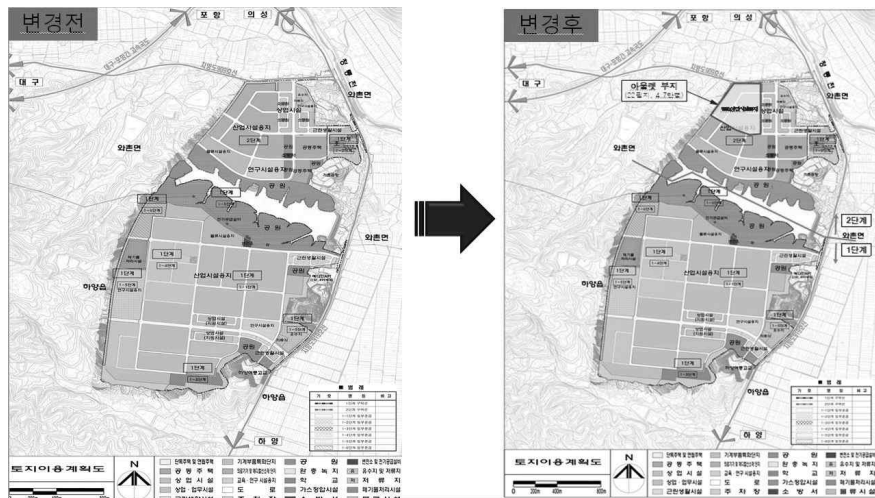
□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내 대규모 아울렛 유치를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자원부에서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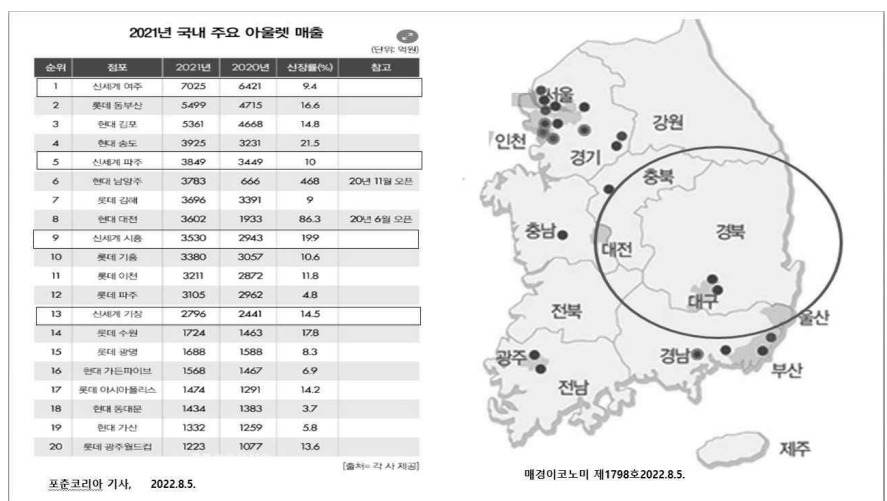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첨단기술 기업, 핵심전략산업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 준수 및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규모 아울렛을 유치하고자 산업자원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시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나 자문회의 등 변경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당초 첨단부품 등을 중점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원활한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경북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대규모 아울렛을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아울렛의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편중 현상으로 경북도민들은 수도권과 부산·김해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어 지역의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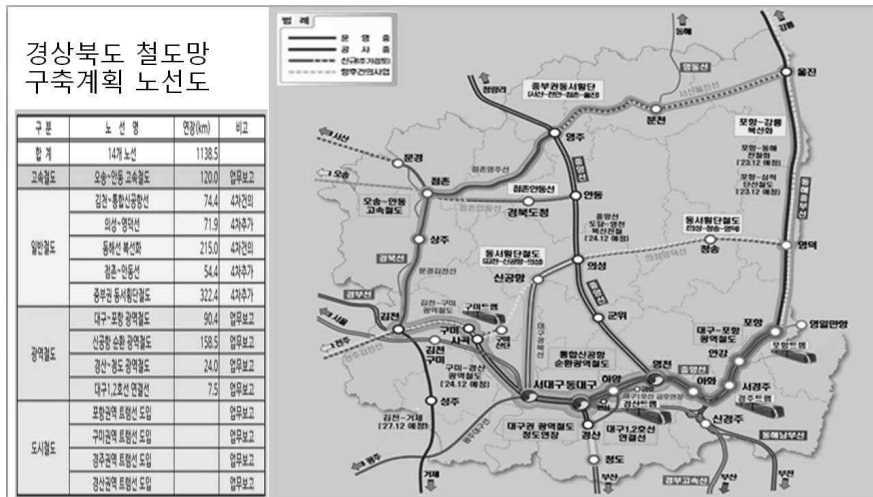
국내 빅3 유통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아울렛 매장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한 것을 볼 때 그 투자가치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아울렛은 가성비 좋은 쇼핑뿐만 아니라 주말나들이에 적합한 체험형 공간과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경북에 유치될 경우 지역민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2030년도 완공되는 통합신공항과 함께 구축되는 광역철도와 도로가 연계된다면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포항, 경주, 영덕 등 동해안 관광권과 연결

함으로써 종전에 수도권과 부산을 주로 이용하던 아웃렛 수요층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아웃렛을 유치할 경우 지역의 미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해 다양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경산시는 대규모 아웃렛이 조성될 경우 연간 5백만 이상의 방문객 유치와 8천억 원의 생산 및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천여 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편리한 복합인프라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어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일터, 삶터, 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한 ‘경산지식 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산업 자원부와 경상북도,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경북도에 대규모 아울렛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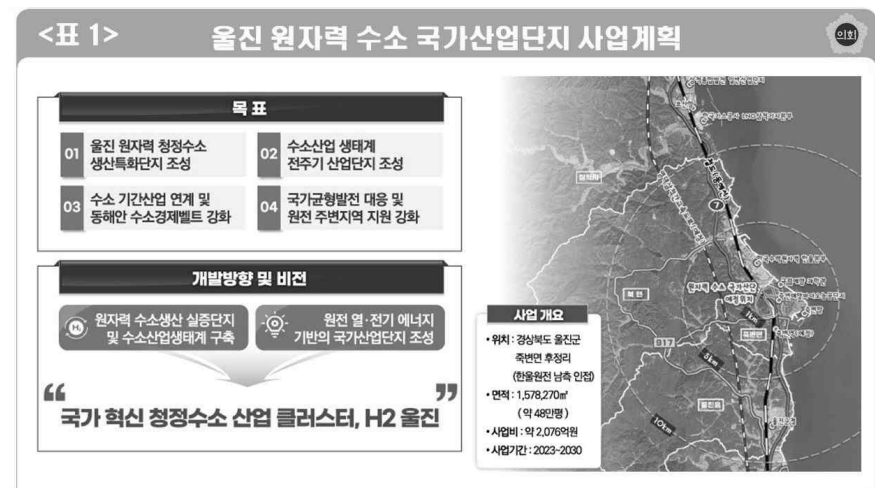
□ 김원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와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및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자력 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열과 증기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값싼 청정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kg당 1만 원 안팎이지만 원자력의 경우 3,500원으로 무려 3배나 저렴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상의 제약 때문에 송전할 수 없는 잉여 전력을 국가산단에 바로 사용할 경우 수소생산 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은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경북도와 울진군, 포스텍, 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각종 MOU 체결과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경북도와 울진군, 국회의원,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산단 유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관련 국가산단 후보지는 울진을 비롯해 충남 내포, 전북 완주 세 곳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울진은 다른 지역보다 최적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진은 2024년 착공 목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가동되면 원전 10기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집적지가 되며, 강원·경북·울산의 대규모 수소 사용 기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청정 수소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수소 대량생산 및 연계산업 육성에도 차별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오랜 교육과 지원으로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소위 경북도와 울진군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으로 경북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최종 후보지 선정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울진이 변방에서 벗어나 환동해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간 뜨거운 열정으로 산단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4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5월 제25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울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1년 제49회 도민체육전을 울진에서 개최한 후 12년 만에 군부에서는 최초로 두 번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지난해 3월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대형산불로 아직 많은 상처와 아픔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화마가 남긴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진군은 성공체전·화합체전·안전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운영인력 비용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북도민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합쳐 극복하는 동심협력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울진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 단계 도약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경북도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9건)	61
□ 동 의 안(3건)	99
□ 결 의 안(1건)	105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23. 2. 9.)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2.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 이상 2)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4/100 " 8/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 등록은 제외 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 이상 2)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2/100 " 4/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0.8/100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	가.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지(전·답) 2) 산·임야, 잡종지 등	제곱미터당 1,500원 시: 제곱미터당 3,000원 읍·면: 제곱미터당 1,500원
	나. 토석·사력 채취허가 (「하천법」)	점용료의 5/100
	다. 골프장 등록	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 매·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 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 세는 제외한다)의 2.5/100

※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 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재정지원) 도지사는 경북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에 전출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문화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공연 등 콘텐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상북도민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
 4. 다자녀가정
 5.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명의를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명의로 본다.
-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⑥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0조(사업)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u> 11. · 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제21조의2(재정지원) 도지사는 <u>경북문화관광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에 전출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제27조의2(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등) ① 공사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2. 공무원이 <u>문화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3. <u>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u>

현 행	개 정 안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공연 등 콘텐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u>경상북도민</u> 2. <u>국가보훈대상자</u> 3. <u>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u> 4. <u>다자녀가정</u> 5. <u>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u> 6. <u>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연월일 : 2023년 2월 1일

제 안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조문의 제20조제10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안 제20조제10호의 조문을 수정함.

3. 수정안: 불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불임

5. 참고사항: 없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10호 중 “운영계획”을 “운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0조(사업) ----- ----- -----.
1. ~ 9. (생략)	1. ~ 9. (생략)	1. ~ 9. (생략)
〈 <u>신설</u> 〉	10. <u>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운영계획</u> 및 연계사업	10. ----- ----- <u>운영</u> -----
<u>10.</u> · <u>11.</u> (생략)	11. ~ 12. (현행 제 10호 및 제11호 와 같음)	11. ~ 12. (개정안 과 같음)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문화예술”을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융복합 콘텐츠산업

- 가.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 나.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 다.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라.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마.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

바. 영화·드라마 등 영상산업 전반

사.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

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민간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민간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명의를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u>지역 문화예술 진흥</u>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문 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u>융복합 콘텐츠산업</u> 가. <u>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 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활동</u> 나. <u>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 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 사·연구</u> 다. <u>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u> 라. <u>융복합 콘텐츠산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u>

현행	개정안
4.·5. (생략) ② (생략)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마.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 바. 영화·드라마 등 영상산업 전반 사.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 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민간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민간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현행	개정안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어민”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6조제1호 중 “신청 직전년도”를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신청 연도 이전에”를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로, “받은”을 “받은 사실이 있는”으로 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수당 지급 제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어민수당의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u>농어업인</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u>농어민</u>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대상) ① (생 략)	제5조(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u>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u>농어민수당</u> ----- ----- ----- ----- ----- -----.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현행	개정안
2. <u>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u> ③ (생략)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u>신청 직전년도</u>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u>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u> 3. (생략) 4. <u>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u> 5.·6. (생략)	2. <u>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u>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 제외) ----- ----- -----. 1. <u>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u> ----- ----- ----- 2. <u>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u> 3. (현행과 같음) 4. <u>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u>----- ----- <u>사실이 있는 사람</u> 5.·6.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
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
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후계
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대한 선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u>〈신설〉</u>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u>〈신설〉</u>	제8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제9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9조 (생략)	제10조·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적용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2.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② 주최·주관이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최 또는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2.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신설〉	② 주최·주관이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5조의2(주최 또는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② <u>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해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를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
음과 같이 한다.

단,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
치원 포함)에 한하여 결원된 위원 수보다 새로운 입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 2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연임하고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 <u>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 <u>1회</u> -----. <u>단,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포함)에 한하여 결원된 위원 수보다 새로운 입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 2회 연임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회 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학부모회 회장을
연임하고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생략)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단,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동 의 안 ＝

-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3. 2. 9.)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23. 2. 9.)
-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3. 2. 9.)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괄표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 득	계	부지	1	48,436.2	7,508	
		건물	3	6,683.3	3,799	
		기타	1		50,000	
	1. 매 입	부지				
		건물				
		기타	1		50,000	소방헬기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부지	1	48,436.2	7,508	현물출자 반환
		건물	3	6,683.3	3,799	현물출자 반환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계약 방법)	취득사유 및 소유지분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 건물연면적				
계	토지		48,436.2	7,508			
	건물		6,683.3	3,799			
	기타		1대	50,000			소방헬기
1	토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46	48,436.2	7,508	'23. 3. (협약)	- 공사 무수익 자산 반환 - 소유지분 : 도 100%	예 산 담당관실
	건물	소 계	6,683.3	3,799	'23. 3. (협약)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46	2,036.5	1,069			
			3,821.0	2,235			
			825.8	495			
2	기타	경상북도	1대	50,000	'23. 9. (조달 입찰)	- 산불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구입 - 소유지분 : 도 100%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

□ 주요내용

① 「차량용 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가. 목 적 : 차량용 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
기관 지원

나. 사용재산 : 차량용 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센터

※ 소유지분 : 도 30%, 시 70%

건물명	소재지	사용 재산	시설전체규모(㎡)		사용신청규모(㎡)		비고 (준공)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	건축 연면적	
차량용 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센터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404	전체	21,591.9	2,989.4	21,591.9	2,989.4	'23. 3.
				평가동 (932.4) 연구동 (2,057)			

다. 사 용 자 : (재)경북테크노파크(경상북도 출연기관)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마. 사 용 료 : 무상(연간 감면액 86백만원 정도)

②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가. 목 적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및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

나. 사용재산 : 산학연유치지원센터 2층 일부

※ 소유지분 : 도 100%

건물명	소 재 지	사용 재산	시설전체규모 (㎡)		사용신청규모 (㎡)		비고 (준공)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	건축 연면적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김천시 울곡동 790 (경북혁신도시)	건물 2층 일부	6,749	11,328.61	-	361.35	'16. 2. 5.

다. 사 용 자 : (재)경북테크노파크(경상북도 출연기관)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마. 사 용 료 : 무상(연간 감면액 44백만원 정도)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취득재산: 5,025,673천 원

- 건 물: 1,175㎡ 5,025,673천 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1건)

- 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175㎡ 5,025,673천 원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변경: 3,840,494천 원

□ (문경)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위치 변경)

- 변경 전 <면적> <금액>
▪ 건물 960㎡ 3,873,842천 원
(소재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69-9

- 변경 후 <면적> <금액>
▪ 건물 960㎡ 3,840,494천 원
(소재지) 문경시 문경읍 상리 486-1, 487-1

㉔ 결 의 안 ㉔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3. 2. 9.)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2023년 2월 9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일시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
 - 회기(안) : 2023. 3. 9.(목) ~ 3. 22.(수), 14일간
 - ※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시로 함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범위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출석요구 이유 : 도정질문, 제1회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대한 답변

의정활동보고서

(제337회 임시회)



2023. 3. 인쇄 / 2023. 3.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